

□ 정부시책 □

‘미래유망 新産業’ 적극 육성

지난 '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이 국내의 여건변화와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 기업간 협력촉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국제산업기술협력 진흥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개편 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에는 21세기 지식·정보 중심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유망 신산업분야에 대해 기술·인력·입지 등의 기업활동 요소지원, 연구소·대학 등 지식인프라의 집적방안 등이 포함된 발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금융·세제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부품공동개발, 공동기술개발, 공동상표개발, 공동판매회사 설립 등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간 협력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또 미국·EU·일본 등 주요국가 또는 지역과의 국제산업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이 매년 국제산업기술협력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특정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단체·기업 등 민간의 국제산업협력 활동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 및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 경영진교체 및 자산매각, 자본투입, 마케팅개선, 조직합리화 등을 통해 회생조치를 취한 뒤 매각해 투자자금을 회수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황업종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불황업종 영위사업자가 사업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유희설비처리사업, 재취업훈련 등 고용조정 관련사업 등에 대해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며 유희설비의 거래촉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유희설비 거래센터는 기업간 유희설비 거래의 중개와 기업설비 등의 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산자부는 지방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지방산업 진흥계획을 기초로 지방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지자체별 지

역성장주도산업육성, 지역산업구조고도화 방안 등을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설립되는 법인 또는 공장,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세제·자금 등을 우대지원키로 했다.

산업기반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그간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사업 등의 지원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산업육성, 관련사업, 지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기업퇴출 촉진을 위한 사업에도 이용토록 했다.

산자부는 산업발전의 급변에 따라 그간 10년 단위로 작성해온 장기산업발전 전망을 5년 단위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으로 변경해 작성하고 매년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정·

보완토록 했다.

산자부는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등에 대해 주력사업체의 집중정도를 평가·공포해 자율적인 사업전문화를 꾀하며 기업경영능력의 증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상담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산업정책자문기구로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회의 연구·조사·심의 활동에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생활산업 업종별 『수출애로 타개반』 설치·운영

산업자원부는 산하 업종별 단체와 함께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업종별 단체에는 중견간부를 전담요원으로 하는 『수출애로 타개반』을 설치하여 전 임직원이 신고된 애로의 해결에 나서고, 산업자원부는 생활산업국·국·과장과 직원 모두가 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수출애로 타개반』은 당해 업종 특유의 애로사항과 개별기업의 애로로서, 자체 해결에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에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전기공업진흥회, 신발산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생활산업부문의 11개 업종별 단체에 이를 설치하여, 신고된 애로에 대하여 접수부터 처리·회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 담당자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여 책임처리를 강화하고, 관련내용을 Code화 하여 관리하는 등 제도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신고된 애로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며,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중간에 처리경과를 해당 기업에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산업부문에 대하여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공업부문과는 달리 대부분의 업계가 중소기업위주로 되어 있고,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지식이나 문제의 자체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섬유·신발 등 경공업부문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법규나 정부정책의 내용자체를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제도시행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그 효과가 좋을 경우 이를 여타 산업 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단체별 전담요원과 전화 및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다.

수출애로타개반 전담직원 명단

기 관	담당자(직위·성명)	전 화 번 호	F A X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박병일 과장	3476 - 0271	3476 - 0275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권영환 차장	528 - 4025	528 - 4070
한국화섬협회	이창욱 차장	734 - 1191	738 - 0111
대한방직협회	김수기 부장	735 - 5741	735 - 5749
한국의류산업협회	강범철 부장	551 - 1462	551 - 1467
한국신발산업협회	채희병 전무	3273 - 0521	3273 - 0525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이성은 차장	551 - 1903	551 - 1910
한국정밀화학공업협회	주만수 이사	786 - 2372	784 - 0322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손삼수 부장	549 - 0981	549 - 0980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최영훈 부장	555 - 6187	563 - 7371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창제 부장	578 - 3068	577 - 1719

輸出中企 벤처기업 인정

이르면 하반기중 수출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기술제품이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수출액이 당해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추가 인정된다.

또 특허기술제품이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없더라도 기술평가기관에서 당해 제품의 기술성과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요건 가운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 사업에 공업발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 인증사업 외 3개 기술사업이 추가된다.

이밖에 연구개발비,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증명해 주는 기관이 현재로선 공인회계사 하나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기술지도사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된다.(관련의견 제출=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02-503-7936)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르면 하반기 중 새 시행규칙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자금·기술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자본재 국산화·고부가화 추진 시급

자본재 부문의 무역적자는 내수위주 품목이 수출주력 품목보다 크게 많은 데다 무역적자가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이 228개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해 이들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 제품 개발 등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는 6천여개 자본재 품목 가운데 '93년부터 '97년까지 수출입에서 500만달러를

초과한 실적이 있는 1,672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무역수지 적자품목이 1,109개로 흑자품목 563개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무역적자가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은 228개로 무역흑자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품목 171개의 1.3배에 달했으며 수출은 없고 수입만 이루어지고 있는 내수위주 품목은 367개로 수입이 없으면서 수출만 이루어지는 품목

84개의 4.4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자본재 수출의 경우 엔화환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최근 엔저 여파로 향후 자본재 수출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입은 설비투자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도한 설비투자 증가와 신규증설 투자의 확대는 납기문제와 수급불균형을 초래, 일부 국산가능 자본재에 대해서도 수입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로 무역수지가 개선된 품목은 785개로 전체의 43%에 달해 자본재산업 육성시책의 추진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93년부터 '97년까지 전체 분석대상에 대한 수출비중은 36%에서 53%로 17% 포인트 증가

했고 반면 수입비중은 58%에서 43%로 15% 포인트 감소했다.

이로인해 '93~'97년 기간중 수출증대 효과는 136억달러에 달했으며 '95~'97년중 수입감소 효과는 113억달러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만성적인 자본재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수출입 증감유형을 고려해 국산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품목별 수요와 무역구조 등을 감안한 국산화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등 시제품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은 없이 수입만 하고 있는 내수위주 367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여부, 수요 등을 감안해 기술제휴나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국산화 방향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감면 고도기술사업 확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시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 고도기술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현행 265개 사업에서 29개를 삭제하는 대신 271개를 신설, 507개로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내용을 업종별로 보면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가 현행 79개에서 92개로, 정밀기계 및 신공정은 36개에서 74개로, 재료·소재는 38개에서 73개로, 신물질·생물산업은 21개에서 46개, 광학·의료기기는 14개에서 19개로 각각 확대된다.

또 항공·수송기계분야는 35개에서 49개, 환

경·에너지가 32개에서 89개, 건설·사회기반 시설이 10개에서 55개로 각각 확대되고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공통서비스업종으로 10개의 사업이 신설된다.

산자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의 51개 고도기술사업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추가했고 10개의 사업은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규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삭제했다.

산자부는 이번 고도기술사업범위의 조정방향으로 위성멀티미디어시스템, 마이크로머신, 자동차종합정보장치 등 국제기술 수준의 급속한 향상 또는 기술혁신 등으로 국내 기술과 큰 차이를 보이는 첨단기술분야와 초고압 워터제트 가공기 등 산업계의 수요는 많으나 국내기술이 낙후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자본재 분야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치제어식 방전·전해가공기, 디지털이동통신 및 위성통신단말기 제품의 연구개발업 등 주한외국상공인 단체와 외국인투자 알선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서 제시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혔다.

또 인터넷·전자상거래 관련기술, 생물산업의 공정 및 공장설계기술,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수출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제한에 따라 제외되었던 발전설비기술·원자력기술, 외국인투자 기피 기술로 분류돼 제외됐던 첨단전자악기제조기술, 신제련·정련기술·첨단주조압연기술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투자를 기피했던 고감성 섬유제품기술, 고기능·고감성 염색가공기술 등을 추가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정안과 관련, 수요는 많으나 국내기술이 낙후해 수입의존도가 큰 핵심자본재 분야,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에서 제시한 외국인투자 관심이 큰 분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서비스업 분야 등 6가지 측면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투자관련 고도기술사업범위 조정결과

분 야	현 행	삭 제	신 설 (재분류)	일부추가 범위확대	일부삭제 규격상향	재조정 (안)
·전자·정보 및 전기	79	11	24	19	8	92
·정밀기계·신공정	36	6	44(14)	4	-	74
·재료·소재	38	3	38	3	-	73

분 야	현 행	삭 제	신 설 (재분류)	일부추가 범위확대	일부삭제 규격상향	제조정 (안)
• 신물질·생물산업	21	1	26	4	-	46
• 광학·의료기기	14	1	6	1	-	19
• 항공·수송	35	-	14(-2)	8	2	49
• 환경·에너지	32	2	59	11	-	89
• 건설·사회기반시설	10	5	50	1	-	55
• 기타산업지원서비스	-	-	10	-	-	10
총 계	265	29	271(12)	51	10	507

(*) 삭제 : 통합에 따른 삭제 포함

■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전기관련)

▣ 전기부문

- 첨단전기설비 및 열처리기기
 - 송변전설비(345KV 이상)
 - 가스절연 개폐장치(362KV, 63KA 이상에 한함)
 - 초전도 응용기기(초전도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한류기)
 - 전력변환장치 기술
 - 불연 전력기기(154KV 이상 도시형 변전설비용)
 - 고속전철용 전기설비(전력공급설비, 차량수·배전설비, 진단설비, 신호설비)
 - 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 전기로, 신소재 가공용전기로, 고주파유도로(30KHz-

500KHz), 고주파인버터식용접기 및 프라즈마절단기, 표면장착부품 납땜 및 절단기, 레이저용접기, 전철용 궤도용접설비, 표면처리식 유도가열장치, 원적외선 가열장치(가열기, 건조기), Microwave건조기, 초음파 응용기기}

■ 조명기기

{3파장·5파장 형광체, 방전등용 발광관, 무전극 방전등, 메탈할라이드 램프, 광학용 할로젠 램프,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후라쉬시스템, 전자식네온변압기, HBO수은램프(반도체 STEPPER용 노광장치), 자동조명제어장치, 전자식 교통신호 및 조명등 감지제어시스템, 무대조명장치용 DIMMER SYSTEM, COMPUTER CONSOLE, PLASMA응용 Lighting}

■ 전자·전기부품 및 재료부문

- 고기능 트랜스포머(로타리 트랜스포머, 고주파(150KHz 이상) 트랜스포머, 아몰퍼스 트랜스포머에 한함)
- 정밀모터(산업용 포함)
 - AC, DC 서보모터
 - 스테핑 모터
 - 브러시리스 DC모터
 - 전기자동차 및 전철구동용 모터
 - 리니어 모터
 - 고효율 전동기
 - 초음파 모터
 - 스캔모터
 - 갈바노모터
 - 초소형 DC Micro모터
 - DC Coreless Vibration모터
 - AC/DC Fan 모터
- 기타 전자·전기관련 부품 및 재료
 - 시스템 보호용 스위치
 - 전력케이블(345KV 이상의 것과 해저용에 한함)
 - 무공해 고성능 2차전지 및 관련부품·소재·장비
 - 안테나(3GHz이상)
 - 전하결합소자(CCD 설계·제조, CCD용 Module)
 - 정밀시험·계측장비의 전용부품
 - 제어장치 및 시스템용 전용부품
 - SMD 및 칩형 부품
 - 고정밀 스위치 및 콘넥터, 릴레이, 고밀도 수정진동자(VCO, TCXO)
 - 식별기용 핵심부품(동전 메카니즘, 이미징센서를 사용한 광학식 지폐식별 인식기)
 - 센서류(특정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품).
 - 인쇄회로기판(회로간격 75 μ m이하, Hole 크기 0.15 ϕ 이하, Ball Pitch 1.27mm 이하 BGA기판, 0.15mm Pitch 이하의 Flip Chip 기판, 4층 이상의 Build-Up 기판)
 - 전자식 아날로그 손목시계용 무브먼트

■ 철도차량부문

■ 철도차량 및 부품

- 전동차(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제어방식)
- 고속전철 및 동부품(속도 200km/h 이상의 것에 한함)
- 자기부상열차 및 그 부품
- 열차운행시스템기술, 그 부품
 -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 및 그 부품
 - 열차신호통신시스템(ATO, ATC) 및 부품
 - 철도차량 Tilting System 및 그 부품
 - 전도차 견인용 AC견인전동기

▣ 엘리베이터부문

- 고속엘리베이터(구동장치, 속도제어장치), 리니어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 핵심부품

▣ 에너지·자원부문

■ 대체에너지 기술

- 발전기술(태양광·풍력·연료전지·소수력·석탄가스화·조력·파력)
- 신연료 제조기술(바이오에너지, 수소에너지)
- 열이용기술(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난방, 태양열시스템, 통합제어장치, 지열·폐기물에너지 이용기술)

- 석탄액화기술
- 에너지절약형 대체 냉매 냉각기술
- Biomass에너지 이용기술

■ 발전설비 및 그 운영기술

- 원자력(핵증기 발생장치, Turbine Generator)
- 화력(Boiler, Turbine Generator)
- 복합화력(Gas Turbine, Turbine

Generator,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Steam Turbine, Gasifier, Turbine Generator and Concerned Auxiliary Facilities}

- 수력(Pump Turbine, Generator Motor, Hydraulic Turbine, Generator) 및 수력 발전 운영·제어기술(Electric Governor, Automatic Voltage Regulator, Condition Monitoring System)

■ 발전기술(동력발전기술, 유동층연소발전기술, MHD(wjswkdbcp) 발전기술, 발전 A/E(Architetur Engineering))

■ 원자력기술

- 원자력 발전설비·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제작, 운영 및 폐기에 관한 기술
- 핵연료 주기기술
- 원자력 안전보장 조치 기술

■ 송전 및 전력저장기술

- 직류 및 초고압(765kV급 이상) 송전기술
- 대용량 전력저장기술
- 전력관련 초전도기술

에너지절약 中企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올해 상환예정인 650개 중소기업의 189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약시설자금에 대해

9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구식 형광램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추천없이도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1년만기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업체는 고효율유도 전동기, 전구식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총 19사가 해당되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경우 삼성에버랜드·LG산전·에너지씨포트 등 19개 업체가 등록·활동 중이다.

산자부는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부도 등으로 유효화되고 있는

중고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보수비용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중소기업과의 자금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기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자기계열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같은 자금지원 확대를 올해에 2,300개 중소기업체에 모두 5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자금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개 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예특회계에서 정기저리로 융자하는 자금

□ 지원현황

○ 지원조건

지 원 분 야	용 자 비 율	이 자 율	상 환 기 간	용 자 한 도
• 집단에너지	소요자금의 100%	연리 9%	8년거치 7년분할	사업자별로 확정
• 절약시설설치				
- 산업체, 건물, 선박, 전기대체냉방	소요자금의 90%	연리 7%	3년거치 5년분할	동일사업자당 50억원까지
- 에너지절약전문 기업투자사업	소요자금의 100%	연리 7%	5년거치 5년분할	동일투자지당 50억원까지

○ 지원규모

구 분		'95까지	'96	'97	'98 (예산)
집 단	금 액 (억원)	7,511	1,108	1,548	1,780
	에너지 사업수 (개)	51	7	7	
절 약 시 설	금 액 (억원)	12,476	871	931	1,557
	사업수 (개)	19,970	640	487	
합 계	금 액 (억원)	19,784	1,979	2,479	3,337
	사업수 (개)	21,063	647	494	

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억원)

□ 개요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에너지사용자의 절약시설에 선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 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 현재 삼성에버랜드, LG산전, 에너지씨포트 등 19개 업체가 등록·활동중
 - 대기업 : 12개사, 중소기업 : 7개사

□ 지원현황

- 지원조건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에서 ESCO 투자사업에 대해 년리 7%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저리자금지원(소요자금의 100% 이내, 동일 투자사업당 50억원 한도)
- 지원규모
 - 총 자금지원 실적

연 도	'93~'96년	'97	'98.1~'98.6.10	계
지원실적	128	57	122	307

※ '97년까지는 인출금액, '98년은 추천금액 기준

- 대기업 ESCO사에 대한 자금지원실적 ('93~'98. 6. 10)

(억원)

구 분	계	계열사	타 사
지원실적 (비중)	296 (100.0)	90 (30.3)	206 (69.7)

3.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 유동전동기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장제도('96. 12월부터 시행)
- 대상품목 및 업체

- 대상품목 : 고효율 유도전동기, 26mm 32W 형광램프,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 인증업체 : 총 19업체(대기업 : 2개사, 중소기업 17개사)

□ 지원현황

-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
 - 인증업체에 대해 50억원 이내의 생산시설자금과 생산시설자금 추천을 받아 시설한 자에 대해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7%,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할당관세 대폭 축소운용

상반기에 모두 70개 품목에 대해 운용되던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하반기에는 53개로 대폭 축소 운용된다.

재정경제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국제원자재가격 인하추이를 감안해 적용품목을 제한적으로 운용키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7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하반기에는 기존 대상품목에서 19개를 제외하는 대신에 신규로 2개를 추가, 적용대상 품목수를 53개로 줄이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호밀·선재 등 수입가격이 하락했거나 작년 관세법 개정시 기본관세율이 인하된 슬랩 등 모두 19개이다.

반면 원자재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기본관세율이 3%인 니켈피와 8%인 이산화티타늄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 각각 2%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제가격이 떨어진 결보리·대두는 1%에서 2%로, 요소와 베어링강은 4%에서 5%로 할당관세율을 각각 1% 포인트씩 올렸으며 가격이 급등한 재생합성스티폴섬유는 3%에서 2%로 인하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과는 별도로 지난 4월 경제대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알루미늄피·원피·목재칩·코발트분·고속도강의봉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한 품목은 107개에 달했으나 재경부는 대상품목을 절반 수준인 53개로 결정했다.